

“한층 강화된 악취방지법, 양돈농가 발목 잡나?”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개정시 대부분 돈사 적용 가능

양돈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 악취방지법을 개정하기 위해, 구립 28일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권고 규정을 마련하고, 악취관리지역 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 개정시 설치신고 의무화 악취배출시설 대상에 축사가 포함될 경우 거의 모든 돈사가 이 법률에 적용을 받아 반드시 설치신고를 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만약 해당 돈사가 설치신고를 받지 못하게 되면 폐업까지 내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소극적일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 관련에 대한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까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화·반월 공단 등 16개뿐으로, 보다 적극적인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악취관리지역 밖의 축산시설 등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의무화했다.

현행법에는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에 한해 설치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축산시설, 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악취발생 및 피해민원이 빈번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설치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지역 밖의 악취관리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다. 생활악취 피해저감을 위해 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대해 악취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분뇨·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악취검사기관의 악취기술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라. 학교 등 쾌적한 환경질이 요구되는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의무화하고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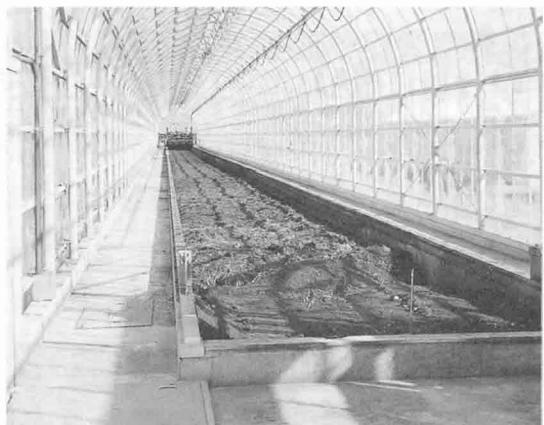
학교, 병원 등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는 공공시설 반경 1km이내에 설치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설치신고를 의무화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 규정,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 간 소화 등 그간의 악취방지법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였다.

기존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해제 규정 신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면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악취관리지역 확대 지정, 공공시설 주변 악취배출원 관리 강화 등 국민들의 생활과 인접한 악취배출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악취오염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향후 신규로 신고의



무화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대해 전문기관,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시행 규칙 등)에서 정할 계획이다.

■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7919

◎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재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을 석유제제품 제조시설, 축산시설, 도축·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등 48개 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악취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지역 내의 악취가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는 지정 대상지역 경계선 밖의 지역에서 악취가 가장 심한 지역의 악취를 공기회석관능법 또는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하게 된다.(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물질 중 어느 한 항목이상이 기준 초과면 지정) 이번 개정법령이 공포되면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를 제거 및 저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의 종류를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악취제거시설에는 △생균제(미생물) △연소 △흡수 △흡착 △촉매반응 △응축 △오존산화 등을 이용한 시설로 구분되며, 소취제·탈취제·방향제 살포,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 덮개 또는 상부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양돈